

##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규정

2017.12.04. 전문개정  
2013.12.06. 개정  
2013.09.01. 개정  
2013.04.01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기획담당 부서장, 교무담당 부서장, 행정담당 부서장 등을 포함하고 위원장은 교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3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4조(심의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의 주요 계획과 예산, 보고서 확정 등의 사항
2. 자체평가 실무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
3. 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나 전공 별로 특성에 맞게 교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보좌에 필요한 사항
4. 기타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사무)** ①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업무 관련부서가 담당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자체평가실무위원회)** ① 위원회의 산하에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겸직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실무를 담당하고, 자체평가 실무위원은 교원양성과정의 교수와 평가담당 실무직원의 지원을 받는다.

**제7조(기타)**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